

第165回國會

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3年11月4日(木)
場 所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國家安全企劃部法改正法律案(鄭大哲·朴相千·李永權·趙淳昇·姜昌成·林福鎮·崔斗煥·姜秀淋議員外 86人 發議)
2.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審査된案件

1. 國家安全企劃部法改正法律案(鄭大哲·朴相千·李永權·趙淳昇·姜昌成·林福鎮·崔斗煥·姜秀淋議員外 86人發議)1面
2.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1面

(14時36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5回國會 第1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政治關係法을 合理的으로 改正하기 위하여 政治發展을 도모하고자 지난 2월에 출범한 우리 特別委員會의 活動時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國會에서는 施政演說 黨代表演說 國政監査 및 對政府質問을 하고 各黨에서는 選舉法 政治資金法 政黨法 등 改正案을 마련하느라 바쁜 日程 때문에 特別委員會開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제 社會改革 經濟改革 諸般改革과 더불어 政治改革을 위한 각종 政治關係法案 立法作業이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政治關係法을 다루는 政治特委에 대한 一般國民의 관심과 기대 또한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동안 이러한 國民의 여망과 時代精神에 부응하기 위해서 밝은 政治의 초석이 될 各種 政治關係法案이 成案되어 政治特委의 案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委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보다 더한 노력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朴阪生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申相式 방금 報告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民主黨所屬 李沅衡委員이 辭任하시고 諸廷坵委員이 새로 補任되었습니다. 諸廷坵委員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廷坵委員 諸廷坵입니다.
살 부탁드립니다.

1. 國家安全企劃部法改正法律案(鄭大哲·朴相千·李永權·趙淳昇·姜昌成·林福鎮·崔斗煥·姜秀淋議員外 86人 發議)
2.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4時39分)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鄭大哲議員外 93人이 發議한 國家安全企劃部法改正法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政府가 提出한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 이상 두件을 일괄하여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相千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議員 朴相千議員입니다. 民主黨이 제출한 國家安全企劃部法改正法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겠습니다.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安企部는 國家情報機關이 그 임무수행을 위해서 가져야 할 거기에 필요한 權限 이상의 방대한

權限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安企部法은 安全企劃部에 情報 및 保安事犯에 대한 搜查權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先進民主國家의 情報機關에 이러한 유례가 없는 그런 權限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사이에 무수한 人權蹂躪이 야기되어 왔고 安企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人權蹂躪이 없도록 하던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익명성이 요구되는 情報機關에 搜查權을 주면 人權蹂躪을 파생할 수 밖에 없고 先進民主主義國家의 어느 나라도 情報機關에 搜查權을 주지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現行法은 安企部の 情報 및 保安業務에 대한 조정·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權限으로 인하여 다른 情報機關은 물론이고 모든 國家機密을 취급하는 中央行政部處를 비롯해서 國家機關들이 安企部の 情報 조정과 保安監査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安企部가 政府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政府가 되게 하는 法的 根據가 되어 왔습니다. 先進民主國家에서는 美國의 中央情報局 制度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러한 權限을 情報機關들의 협의체나 다른 上位機關이 擔當하여 이 폐단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現行法은 安企部の 政治介入과 職權濫用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安企部 豫算에 대한 實質監査는 합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數十年동안 安企部는 막강한 權限과 방대한 豫算으로 國民과 政府위에 군림하고 政治에 介入하여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安企部の 횡포는 安企部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權限을 法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왜 法이 이러한 權限을 安企部에 부여했는가? 5·16軍事革命 당시 執權者가 安企部를 國家情報機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니고 統治機構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립하였기 때문에, 즉 統治機構 情報政治의 중추기관에 알맞는 法的 權限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異議가 있으신 분은 지난 軍事革命時節에 安企部가 수사한 政治

的 사건과 政治介入事例를 살펴보면 쉽게 의문이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 安企部の 法的 權限을 축소하지 말고 安企部の 자제를 요구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國家機關이 合法的으로 부여되어 있는 權限을 행사하지 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 이 현상은 오래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퍼슨이 지적한 바와같이 民主主義國家의 法과 制度는 權力濫用을 의심하는 猜疑와 질시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불변의 立法原理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文民時代에 맞추어 安企部가 統治機構 情報政治의 中樞機關으로서의 구각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國際環境에 적응해서 그 業務領域의 새 지평을 여는 새 시대의 國家情報機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改正法律案을 提案합니다.

이제 安企部는 政治에 介入 안하고 다른 搜查機關이 얼마든지 담당할 수 있는 內國人搜查 公務員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保安監査 등 政府機關에 대한 介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國內에서의 權限行使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共產圈이 붕괴되고 經濟戰爭이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國際環境에서 그 安企力量을 발휘하도록 換骨奪胎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現行 安企部法을 國家情報處法으로 全文改正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安企部 改編은 民主 정착과 經濟 도약을 위한 情報機構改編의 첫번째 項目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法案의 자세한 내용은 主要骨子和 法案條文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는 核心爭點만을 政府 改正案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民主黨이 提案한 安企部法改正案의 核心爭點을 각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째 5·16軍事革命 때 부여한 統治機構의 性格의 권한 다시 말하면 情報機關의 機能을 위한 권한이 아니고 國家機關과 國民統制를 위한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첫째로 搜查權을 폐지해야 합니다. 政府案은 搜查權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盧泰愚政權 당시의 改正案이 搜查權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축소를 킨 것마저 없애버렸습니다.

두번째로는 情報 및 保安業務에 대한 調整權은 國家安全保障會議과 같은 다른 上位機關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한 情報機關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地球上에 韓國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政府 改正案을 보면 安企部內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情報調整協議會를 폐지했습니다. 情報調整協議會가 다른 機關 公職者들을 불러 가지고 關係機關對策會議를 한다고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로는 安企部가 이 재는 단독으로 情報調整權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安企部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安企部의 情報調整權에 의해서 다른 情報機關은 완전히 安企部에 예속되고 大統領은 한 情報機關으로부터의 情報에 매이게 되는, 多重的 情報 채널을 갖지 못하는 폐단이 노출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保安業務에 대한 監督權을 다른 機關에 이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民主黨案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政府 改正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行政機關을 비롯한 各級 國家機關에 대해서 保安監査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존치시켜 놓았습니다. 이 保安監査에 의해서 安企部가 다른 行政機關을 지금까지 통제해 왔습니다. 지금 公務員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保安監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 놓았습니다.

美國과 獨逸에 갔을 때 保安監査에 대해서 물었더니 獨逸의 情報部長과 美國의 CIA 部長이 그 개념을 모릅니다. 保安監査는 機關長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情報機關이 다른 行政機關을 돌아다니면서 監査하는 나라가 이 地球上에 어디 있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그런데 소위 改革立法이라고 내놓은 政府 改正案에 이것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安企部는 이 數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밖에 안

하겠다... 왜 조금밖에 안 합니까? 좋은 권한이면 다 해야지...

그리고 조금 밖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젠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法律에 규정되지 아니한 權限縮小는 언젠든지 다시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큰 카테고리로 國會의 安企部監督 權限이 오히려 약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질 國會의 情報委員會는 현재의 國防委員會보다 그 권한이 약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情報委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美國과 獨逸이 國會에 情報委員會를 둔 이유는 그 핵심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情報機關의 豫算에 대한 實質審査를 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情報機關의 機密事項情報를 받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밀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情報機關을 감독하겠다는 두가지 목적때문에 情報委員會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았더니 豫算에 대해서는 獨逸이나 美國이나 간에 情報委가 아예 豫算을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실상 豫算決定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情報機關의 감독을 위해서 證言 答辯 資料提出같은 것은 두 가지 例外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情報의 出處保護 이것은 情報의 出處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法律이 있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海外機密 工作事業에 대해서는 答辯을 거부하고 나머지는 다 答辯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國會의 情報委員會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情報委制度가 필요하다고 해서 與野 領袖會談 때 大統領의 언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外國에까지 갔다 왔는데 情報委員會에 이런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國會에 情報委員會가 설치되어도 安企部豫算에 대하여 實質審査를 못하도록 政府의 改正案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安企部法 第10條에 있는 豫算審議에 대한 總額審査制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實質的 審査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安企部豫算과 國防費 일부를 經濟企劃院所管 豫備費로 분식시켜서 사실상 豫算審議를 못하게 하는 회피하는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을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民主黨案에서는 情報委에서는 實質審査를 하고 이것을 豫決委나 外部에 공개할 때는 總額으로 하도록 해서 비밀은 지켜주고 實質的인 豫算審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아예 주지를 않고 현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國會에 新設될 情報委員會는 현재의 國防委보다도 秘密事項聽取權限이 더 축소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國會의 安企部에 대한 監督權限 統制權限은 더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현재의 國防委는 現行 安企部法에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을 答辯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뒤에 제정된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 第4條에 의해서 軍事 外交 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을 발표하면 國家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중대정보를 제외하고는 다 答辯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情報도 安企部長의 소명이 있어야 하고 安企部長의 소명이 있어도 國會가 요구한다고 하면 다시 總理가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 國防委員會가 이 條項에 의해서 安企部에 대한 國政監査를 하고 있고 또 國政調查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 條項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政府가 내놓은 改正案을 보면 國家의 安全保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機密事項에 대해서는 答辯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法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 後法優先의 原則에 의해서 이 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國會의 國政調查委

員會나 情報委員會는 安企部에 대해서 國家의 安全保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機密事項이라고 그러면 答辯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國會의 권한은 이 改正案에 의해서 현저히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機密事項聽取權限이 현재보다 축소되는 情報委의 安企部監督 權限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情報委의 安企部豫算審議權이 현실에 있어서는 따라서 축소됩니다.

왜? 秘密事項을 듣지 못 하는데 어떻게 安企部 豫算을 質疑 審査합니까? 이 豫算이 무엇이고 아 그것은 秘密事項입니다 하던 끝이에요.

그리고 國會의 安企部에 대한 國政監査權도 똑같이 축소됩니다. 安企部에 관한한 이 法이 後法優先原則에 의해서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豫算에 대한 實質審査도 못하고 秘密事項도 청취하기 어려운 情報委員會를 무엇때문에 만듭니까 현재의 國防委員會보다 더 약화된 情報委員會를 무엇때문에 만듭니까?

그리고 이런 法案을 내 놓고 싶으면 솔직히 國民앞에 이러이러한 권한을 내야겠소 할 일이지 왜 國會의 監督權限을 대폭 강화했다고 허위선전 합니까? 國民과 國會議員과 言論을 문맹자 취급하는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政治關與罪를 신설했다고 大大的으로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았더니 현재의 國家公務員法 第65條에 있는 全 國家公務員의 政治介入禁止條項을 그대로 준용하고 刑만 懲役 1年이하에서 懲役 2年이하로 올렸습니다. 1年이하의 懲役이나 2年이하의 懲役이나 公訴時效가 3年입니다.

情報機關의 政治介入을 막으려면 公訴時效를 大統領任期보다 더 늘려야 합니다. 大統領 지시 안 받고 政治介入할 情報機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法을 잘 모르는 사람은 1年이 2年으로 되었으니까 배가 늘었네 이렇게 칭찬하도록 해 놓고 실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알맹이가 없는

政治關與罪 신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安企部の 安保力量을 감소시킬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政府의 改正案에 安企部の 情報 蒐集權限에 防諜情報와 對 테러情報등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安企部の 情報蒐集權限을 더 확대해 놓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政府改正案을 비판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情報機關에 필요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情報機關에 필요하고 國家安保에 필요하면 民主黨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지하겠습니다. 民主黨은 安保를 약화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民主國家로 있게 하고 싶어요. 軍事政權의 잔재를 씻고 정상적인 보통의 民主主義 國家로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民主黨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5·16때 여러 機關을 통제하고 國民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安保와 무관한 불필요한 권한을 삭제하고 다시 안보에 필요한 어떤 권한이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民主主義國家에서의 情報機關... 南北分斷이 되었으니가 特殊 狀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外國에서는 海外情報와 國內情報를 서로 분리시켜 놓았는데 民主黨 法案 자체에서 安企部에 海外情報와 國內情報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民主國家만 되자 이것입니다. 이상한 나라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民主國家만 되게 法을 만들어 내놓으시오 하는 것이 우리 요구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봐서 이번의 政府의 安企部法改正案은 새로운 反民主惡法을 생산한 案에 불과한 것이고 安企部 權限強化法案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歷史를 후퇴시키는 法案이 우리 政治特委에서 대폭 수정돼서 우리나라가 보통의 民主國家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提案說明에

같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朴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提案說明에다가 討論에다가 다 하셨기 때문에 할 일이 앞으로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總務處長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處長官 崔昌潤 總務處長官입니다.

존경하는 申相式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文民政府가 출범한 이래 전국민의 지지속에서 질세없이 이루어진 개혁작업의 지속적·항구적 추진을 위하여는 개혁의 制度化·法制化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政府는 國家安全企劃部가 國家情報機關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는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國家安全企劃部法 改正內容은 國家安全企劃部の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國家安全企劃部の 업무수행에 대하여 國民代表機關인 國會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世界各國 情報機關의 기능변화추세에 부응하여 업무범위에 새로운 정보영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改正法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國家安全企劃部の 國內保安情報業務에 防諜情報·대테러정보 및 國際犯罪組織情報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탈냉전에 따라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經濟戰爭時代를 맞아 각국 情報機關이 군사·안보정보에서 경제·과학정보로 업무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과 제도를 같이하여 우리 尖端產業技術情報 보호를 위한 防諜情報活動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비한 정보활동 및 국제적 정보협력의 필수적인 마약 위폐 폭력 등 國際犯罪組織에 관한 정보활동 등의 법적근거

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企劃部の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둘째, 國家安全企劃部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신구속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천명함으로써 그동안 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한 모든 비난의 진원이 되어온 정치개입 의혹을 불식하고 對共事犯 搜查時에도 인신구속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憲法과 刑事訴訟法 등의 기본원리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임을 명문화 함으로써 인권침해 시비의 여지를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國家安全企劃部の 部長 次長 및 企劃調整室長에 대하여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든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65條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에 대한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國家安全企劃部法에 명시하고 위반시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가중처벌 함으로써 뼈를 깎는 자성숙에서 國家情報機關의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國家安全企劃部長은 國會에 설치되는 情報委員會로부터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答辯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機密事項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한 國會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文民政府時代를 맞아 국민에게 알릴 것을 알리고 과감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종래 정보독점의 폐단을 시정하는 한편 중요한 國家機密事項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가기밀보호와의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섯째, 국가정보정책의 수립과 정보판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

여 國家安全企劃部에 설치한 情報調整協議會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情報調整協議會가 國家情報企劃·중장기 정보판단 사항을 협의하는 상설기구로서 有關情報機關間的 정보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필요성이 상존하기는 하나 그동안 情報調整協議會가 關係機關對策會議로 오인되어 다른 부처에 대한 간섭의 수단이라는 오해가 있어 은 이상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改正案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과 급변하는 국가안보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고 文民政府의 개혁의지의 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논란되어 왔던 國家安全企劃部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이번에 政府가 제출한 改正案의 취지를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韓世東 專門委員입니다.

鄭大哲議員 朴相千議員 李永權議員 趙淳昇議員 姜昌成議員 林福鎮議員 崔斗煥議員 姜秀淋議員外 86人이 發議한 國家安全企劃部法 改正法律案과 政府에서 提出한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件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생략하고 檢討意見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便宜上 政府에서 提出한 案을 第1案으로 하고 議員發議로 提出된 案을 第2案으로 略稱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 提案理由

가. 第1案의 提案理由

國家安全企劃部가 國家情報機關으로서의 본然的 任務에 忠實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企劃部の 政治的 中立을 制度的으로 보장하고, 國家安全企劃部の 業務遂行에 대하여 國民代表機關인 國會

의 統制를 強化하는 한편, 世界各國 情報機關의 機能變化趨勢에 부응하여 業務範圍에 새로운 情報領域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第2案의 提案理由

○현재의 國家安全企劃部(이하 “安全企劃部”라 한다)는 國家情報機關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가져야 할 權限 이상의 방대한 權限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행 國家安全企劃部法은 安全企劃部に 情報 및 保安事犯에 대한 搜查權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先進民主國家의 國家情報機關에 유례가 없는 權限이며, 이로 인하여 그 사이 무수한 人權蹂躪을 야기하여 왔다. 安全企劃部の 搜查權 보유문제에 대해 앞으로는 人權蹂躪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으나, ‘익명성’이 요구되는 情報機關이 搜查權을 장악하면 人權蹂躪이 과생할 수 밖에 없으며 先進民主國家에서 情報機關에 搜查權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現行法은 安全企劃部に 情報 및 保安業務에 대한 調整·監督의 權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權限으로 인하여 다른 情報機關은 물론 國家機密을 취급하는 中央行政部處를 비롯한 모든 國家機關은 安全企劃部の 情報調整과 保安監査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安全企劃部가 ‘政府위에 군림하는 政府’가 되게 하는 法的根據가 되어 왔다.

先進民主國家에서는 미국의 ‘中央情報長(DCI)’제도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러한 權限은 情報機關의 協議體나 다른 上位機關이 擔當하여 이러한 弊端을 防止하고 있다.

그리고, 現行法은 安全企劃部の 政治介入과 職權濫用에 대한 牽制裝置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安全企劃部豫算에 대한 實質審査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수십년동안 安企部는 막강한 權限과 방대한 豫算으로 國民

과 政府위에 군림하고 政治에 介入하여 왔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安全企劃部の 횡포는 安全企劃部가 그 職權을 남용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權限을 法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왜 법이 이러한 權限을 부여하였는가? 5·16軍事革命당시 집권자가 安全企劃部를 國家情報機關의 機能만을 遂行하도록 설립한 것이 아니고 統治機構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즉, 統治機構, 情報政治의 中樞機關에 맞는 法的 權限을 부여한 것이다. 이 점에 의문이 있으면 지난 軍事政權時節 安全企劃部가 搜查한 政治的事件과 政治介入事例를 살펴보면 쉽게 의문이 풀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安全企劃部の 法的 權限을 縮小하지 말고 安全企劃部の 자재를 요구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國家機關이 合法的 權限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라는 것은 잘못이며 또 이러한 현상은 오래 갈 수도 없는 것이다. 「제퍼슨」의 지적과 같이, 民主國家의 法과 制度는 權力濫用을 의심하는 시의와 질시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불변의 立法原理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文民時代에 맞추어 安全企劃部가 統治機構, 情報政治의 中樞機關으로서의 구각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國際環境에 適應하여 그 業務領域에 새지평을 여는 새시대의 國家情報機關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 이 改正法律案을 提出한다. 이제 安全企劃部는 政治에 介入하거나 다른 搜查機關이 얼마든지 擔當할 수 있는 內國人搜查, 公務員의 士氣를 위축시키는 政府機關 介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公産권이 붕괴되고 經濟戰爭이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國際環境에서 그 역할을 발휘하도록 환골탈태되어야 한다. 우리가 현행 國家安全企劃部法을 國家情報處法으로 全文改正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安全企劃部改編은 民主定着과 經濟跳躍을 위한 政府機構改編의 첫 번째 項目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與·野 議員 여러분이 第14代 國會의 時代的 責務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要望한다.

2. 主要骨子

가. 第1案의 主要骨子

가) 脫冷戰에 따른 世界各國 情報機關의 機能變化趨勢에 부응하여 國家安全企劃부의 國內保安情報業務에 防諜情報·對테러情報 및 國際犯罪組織情報를 追加함.(案 第2條第1項第1號)

나) 國家安全企劃부는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政治的 中立을 維持하여야 하며, 人身拘束등 國民의 基本權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適法한 節次를 遵守하도록 明文化함.(案 第2條第2項)

다) 國家安全企劃부의 部長·次長 및 企劃調整室長에 대하여만 政治活動을 금지하도록 하는 規定을 모든 職員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금지되는 政治活動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65條의 規定을 準用하되,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公務員에 비하여 加重處罰하도록 함.(案 第8條 및 第16條)

라) 國家安全企劃부에 대한 國會의 統制를 強化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企劃部長은 國會에 설치되는 情報委員會로부터 資料의 제출, 證言 또는 답변의 요구가 있는 경우 國家의 安全保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機密事項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함.(案 第11條)

마) 國家情報政策의 수립과 情報判斷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協議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企劃부에 設置한 情報調整協議會를 廢止함으로써 그동안 關係機關對策會議으로 誤解되어 다른 部處에 대한 간섭의 手段이라는 疑惑의 소지를 拂拭함.(案 第13條)

나. 第2案의 主要骨子

가) 名稱을 國家情報處(이하 “情報處”라 한다)로 함(案 第1條)

나) 情報處의 地位

○情報處는 大統領에 소속하며 大統領의 指示, 監督을 받도록 하되(案 第2條第1項)

○情報處는 國家情報政策과 保安業務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그 施行에 관한 사항과 情報 및 保安業務에 대한 調整·監督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이 議長으로 있는 國家安全保障會議의 調整·監督을 받도록 함(案 第2條第2項).

다) 情報處의 職務範圍

○情報處의 職務를 다음과 같이 規定함(案 第3條)

1. 對外情報(對北情報와 產業技術情報를 포함한다), 對共情報, 防諜情報, 對政府顛覆情報의 蒐集·判斷·配布
2. 國家機密에 속하는 文書, 資料, 施設 및 地域에 대한 保安業務
3. 第1號 및 第2號의 業務에 관한 政策樹立資料의 綜合·評價와 「國家安全保障會議」에 提出하는 情報 및 保安基本計劃의 企劃案 作成
4. 情報處 職員의 犯罪중 職務遂行중의 犯罪에 대한 搜查

○이는 現行法이 規定하는 職務에 다음과 같은 變更을 가한 것임(法 第2條 參照)

- (1) 搜查權을 廢止함.
- (2) 情報蒐集圈에서 海外 產業技術情報가 명시됨.
- (3) 情報 및 保安業務의 調整·監督權을 上位機構인 「國家安全保障會議」에 이관하고, 이에 따라 安全企劃部 傘下機關인 「情報調整協議會」가 폐지됨. - 그 결과, 安全企劃부의 각 行政機關에 대한 調整官制度는 法的根據가 상실되고, 各級 機關에 대한 保安監査는 「國家安全保障會議」의 權限으로 移管됨(國家安全保障會議法改正法律案 별도제출)

(4) 職員에 搜查權이 “職務와 관련된 犯罪”에서 “職務遂行중의 犯罪”로

축소됨.

라) 情報處의 組織

○情報處의 處長과 次長 및 室·局·課를 두되, 職務遂行상 필요한 경우에는 次長을 2人 이상 둘 수 있도록 함(案 第4條第1項).

- 이는 海外産業技術 情報擔當등 職務分野別 次長制를 둘 수 있게 한 것임.

○室·局·課의 설치와 分掌事務 및 職員의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함(案 第4條第2項).

- 現行法은 安全企劃部의 組織은 部長이 定하도록 하고 있음(法 第3條第1項).

○支部設置는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情報處의 職務遂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特別市·直轄市·道の 일부에 大統領이 한시적으로 支部設置를 할 수 있도록 함(案 第4條第3項).

- 現行法은 安全企劃部는 필요한 地域에 支部를 둘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고, 주요 市單位까지 出張所가 설치됨(法 第3條第2項).

마) 處長, 次長과 其他職員의 職位

○處長과 次長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室·局長은 處長의 提請에 의해 大統領이 任命토록 함(案 第5條第1項).

○處長은 國務委員級, 次長은 次官級으로 함(案 第5條第4項).

○處長, 次長이외의 職員人事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을 적용하되,

○情報處職員은 특수한 勤務條件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職員의 任用, 敎育訓練, 報酬 또는 身分保障에 관하여 法律로 特例를 規定할 수 있도록 함(案 第5條第5項-情報處職員法에서 規定할 사항).

바) 兼職禁止

○處長, 次長 및 室·局長은 다른 職務을 兼任할 수 없도록 함(案 第6條).

- 現行法은 安全企劃部長, 次長과 企劃調整室長만을 兼職禁止 대상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兼職의 範圍이 조정되고 있고 情報處 職員의 전문화를

위하여 兼職禁止 대상을 室·局長까지 확대함(法 第7條).

사) 豫算의 實質審査(案 第9條).

○情報處를 豫算會計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獨立機關으로 함.

○情報處의 歲出豫算 요구는 그 款·項을 國家情報處費와 情報費를 구분하여 總額으로 하되, 그 算出內譯과 豫算會計法 第31條에 規定한 豫算案의 添附書類를 國會情報委員會에 제출토록 하여 실질심사토록 하고, 國會情報委員會는 豫算의 증감을 國家情報處費 增減額과 情報費 增減額으로 구분하여 國會豫決委에 제출토록 하며 情報處의 豫算內譯은 公開할 수 없도록 하여, 豫算의 실질심사와 情報活動의 秘密保障을 양립토록 함(國會情報委 설치를 規定한 國會法改正案 별도제출).

○安全企劃部의 歲出豫算중 미리 企劃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秘密活動費'는 豫備費 명목으로 總額으로 다른 機關의 豫算에 計上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또한 國會情報委員會에 審議資料를 제출하도록 함.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은 廢止함(案 附則 第2條).

- 위 法은 "國家安全保障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豫備費"는 그 사용과 決算을 總額으로 하여

○經濟企劃院 소관으로 하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그 豫備費의 定義가 애매모호하고 施行令을 보면 情報活動費, 搜查活動費, 機密에 속하는 軍施設과 裝備의 보강 및 이에 수반되는 經費까지 포함시켜 規定하고 있어서 특례의 範圍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위 法을 폐지하고, 미국 CIA의 경우와 같이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 활동비'만을 예비비 명목으로 他機關의 豫算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아) 國會에서의 증언, 답변등(案 第10條)

○處長, 次長 및 기타직원은 國會本會議과 國會情報委員會 및 國會豫算決算委員會 또는 國政調査委員會의 國政調査나 監査院의 監査에서 資料의 제출,

證言 또는 답변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軍事, 外交, 對北關係의 國家機密로서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機密事項”이라는 處長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속하는 資料의 제출, 證言 또는 答辯을 거부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國會本會議 또는 所管委員會는 國務總理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國務總理가 7일이 내에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資料의 제출, 證言 또는 答辯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處長은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證言 또는 答辯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證言·答辯拒否의 사유가 되는 ‘國家機密’의 모호성에 유의하여, 이 法에서 ‘國家機密’이라 함은 國家의 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人員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다른 國家 또는 集團에 대하여 秘密로 할 사실, 物件 또는 知識으로서 法令에 의하여 國家機密로 분류된 사항에 한정된다고 規定함.

- 現行法은, 安全企劃部長은 國會의 豫算審査 및 國政調査와 監查院의 監査에 있어서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資料提出, 證言·答辯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음(法第11條).

- 改正條項은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 第4條와 같은 내용임.

자) 會計檢査 및 職務監察의 보고(案 第11條)

○ 處長은 매년 1회이상 그 책임하에 所管豫算에 대한 會計檢査와 職員의 職務遂行에 대한 監察을 행하고, 그 결과를 大統領과 國會情報委員會에 보고하도록 함.

차) 政治關與罪 新設(案 第15條 및 第7條)

○ 處長, 次長 및 其他職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政治活動에

關與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과 10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하도록 함(案 第15條第1項).

- ‘政治活動에 관여하는 行爲’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명백히 規定함(案 第7條第3項).

1. 政黨이나 政治團體의 結成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特定政黨 또는 特定政治人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또는 이러한 輿論을 조성할 목적으로 特定政黨 또는 特定政治人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特定政黨 또는 特定政治人을 위하여 寄附金募集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公共資金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特定政黨 또는 特定人의 選舉活動을 하거나 選舉關聯對策會議에 관여하는 행위
5. 所屬職員이나 他機關 公務員에 대하여 第1號 내지 第4號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各號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 情報處는 政黨 기타 政治團體를 내사할 수 없도록 하되, 직무수행상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대한 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大統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案 第15條第2項).

카) 職權濫用罪의 新設(案 第16條 및 第8條)

○ 處長, 次長 및 其他職員은 法律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國家機關이나 團體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위

반시 10年이하의 懲役과 10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하도록 함(案 第16條第1項).

○處長, 次長 및 其他職員은 法律에 規定된 職務의 범위를 넘어 그 職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案 第16條第2項).

타) 國家機密漏泄罪등의 新設(案 第17條)

○處長, 次長 및 其他職員이나 이러한 職에 있었던 者가 그 職務상 知得한 國家機密을 公開 또는 누설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과 10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하도록 함(案 第17條第1項).

○處長, 次長 및 其他職員이나 이러한 職에 있었던 者가 그 職務상 知得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秘密을 公開 또는 누설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案 第17條第2項).

파) 經過措置(案 附則 第3條)

○이 法 施行當時 安全企劃部の 部長, 次長은 이 法에 의한 情報處의 處長, 次長으로 보며

○이 法 施行當時 安全企劃部가 搜查중인 事件중 安全企劃部職員의 職務遂行중의 犯罪事件을 제외한 나머지 事件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月내에 다른 國家搜查機關에 인계하여야 하며, 情報處는 위 기간중 該當事件의 搜查 終結을 위한 사항에 한하여 搜查할 수 있도록 하고,

○情報處는 國家安全保障會議法改正에 의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 事務處에 情報 및 保安業務의 調整·監督機構가 설치될 때까지 情報 및 保安業務의 調整·監督을 행하도록 함.

하) 다른 法律과의 관계(案 附則 第4條)

○이 法 施行當時의 政府組織法 기타의 法令중 “國家安全企劃部”는 “國家情報處”로, “國家安全企劃部長”은 “國家情報處長”으로 보도록 함.

유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職員의 政治活動禁止입니다. 現行 法에서는 部長·次長 및 企劃調整室長에게만 政治活動을 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改正案에서는 모든 職員에게 政治活動을 禁하고 있으며 이를 違反할 경우 處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第1案: 第8條第1項 및 第16條, 第2案: 第7條第1項 및 第15條).

둘째, 國會에 情報委員會를 設置하여 豫算案·決算 및 기타 案件에 대한 資料의 提出·證言·答辯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한 國會의 統制機能을 強化하였습니다(第1案: 第11條第2項, 第2案: 第9條 및 第10條).

셋째, 安全企劃部の 情報調整協議會制度를 廢止하였습니다.

다음은 第1案과 第2案의 差異點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機關의 “名稱”에 관하여 第1案은 現行대로 두고 있으나, 第2案은 “國家情報處”로 改稱하고 있습니다(第1案: 第1條, 第2案: 第1條).

둘째, “情報·保安業務”에 관하여 第1案은 現行대로 두고 있으나, 第2案은 國家情報政策 및 保安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의 調整·監督을 받도록 하였습니다(第1案: 第2條第1項, 第2案: 第2條第2項).

셋째, 職務의 範圍에 관하여 第1案은 國內保安情報業務에 防諜·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情報를 追加하였으나, 第2案은 現行 國內保安情報業務라는 용어를 削除하되 방첩정보를 추가하고 對外情報業務에 對北·產業技術情報를 포함시켰습니다(第1案: 第2條第1項第1號, 第2案: 第3條第1號).

넷째, 職務중 “搜查權”에 관하여 第1案은 現行대로 存置하고 있으나, 第2案은 情報處 職員의 犯罪중 職務遂行中の 犯罪에 限하도록 하였습니다(第1案: 第2條第3·4號, 第2案: 第3條第4號).

다섯째, 支部設置에 관하여 第1案은 現行대로 하고 있으나, 第2案은 특히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特別市·直轄市·道の 일부에 大統領이 限時的으로 設置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第1案: 第3條第2項, 第

3. 檢討意見

먼저 第1案과 第2案의 내용이 같거나

2案：第4條第3項).

여섯째, 職員의 人事등에 관하여 第1案은 現行대로 두고 있으나, 第2案은 處長·次長이외의 職員의 人事에 대하여 國家公務員法을 適用하도록 하였습니다(第1案：第6條, 第2案：第5條第5項).

일곱째, “豫算會計”에 관하여 第1案은 現行制度를 그대로 두고 있으나, 第2案은 國會情報委員會에 豫算案算出內譯등을 提出토록 規定하고 있습니다(第1案：第10條, 第2案：第9條第2·3項).

여덟째, 會計檢査 및 職務監察에 대하여 第1案은 現行대로 두고 있으나, 第2案은 그 결과를 國會情報委員會에도 報告토록 하였습니다(第1案：第12條, 第2案：第11條).

아홉째, 武器使用에 대하여 第1案은 現行대로 警察官職務執行法 第11條의 規定을 準用토록 하고 있으나, 第2案은 刑法이 規定하는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되는 때 이외에는 使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第1案：第15條第2項, 第2案：第14條第2項).

열째, 第2案은 情報處職員의 職權濫用 및 國家機密漏泄에 대한 處罰條項을 新設 하였습니다(第2案：第16條 및 第17條).

마지막으로 第2案은 現行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을 廢止하도록 하였습니다(第2案：附則 第2條).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마치고 우리 特委運營 합의된 대로 第2審議班에 회부하여 本 案件을 審議하도록...

○姜秀淋委員 檢討意見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政府案이 條文體系上 아무 問題點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을 專門委員이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事項중에 2條2項을 봅시다. 이런 條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나 이것이에요. 이 條項을 한번 읽어보세요. 安企部는 「人身拘束등 國民의 基本權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合法的 節次를 준수하여야 한다」 무슨 條項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憲

法보다 더 위에 있는 法입니까? 이런 條項을 改革立法案에 넣으면 안되는 것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專門委員의 檢討가 안되고 무슨 다른 얘기만 列舉하면 되겠어요? 憲法上에 당연히 人權保護가 되어있는 것이고 適法節次를 준수해야 되는 것인데 安企部法에다가 무슨 憲法과 같은 條項을 왜 집어넣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이런 점은 體系上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委員長 申相式 姜委員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幹事會議 때 兩黨幹事님께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是是非非는 할 것 없이 兩 法案에 대한 差異點만 설명하는 것으로 줄이자 이렇게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專門委員이 그렇게 檢討報告를 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秀淋委員 安企部法이 무슨 憲法 上位法 같이 國民의 人權을 침해하고 國民의 基本權을 제한할 때는 合法的 節次를 준수한다 이런 法律體系의 思考方式을 가지고 改革立法에 넣느냐 이것이에요.

○李永權委員 委員長께서 安企部法에 대한 改正案을 各 班別로 審議를 할 것을 幹事會議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是正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本委員이 問題提起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改革立法 그중에서도 安企部法은 너무도 중요한 事案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事案을 두고 國會에는 本會議를 통해서 改革特委를 발족시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國會의 權威, 議決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심도있는 論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全體會議에서 심도있는 論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要旨가 나오면 좀 效率性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1班 2班을 나누어서 거기서 정리를 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야지 이 중대한 事案의 法案을 놓고 바로 제대로 審議도 못한 채 소위 班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國會의 議決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더구나 중대한 法案은 國民的인 관심을 사고있는 事案인데 이렇게

다루어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議決을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事案을 놓고는 大體討論을 우리 全體會議에서 하고 그 후에 班에 넘겨서도 討議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幹事會議에서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본의에 反하는 문체이기 때문에 먼저의 議決을 살리고 또 國會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심도있는 論議를 全體會議에서 하는 것을 提案하고 싶습니다. 그에 따른 決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相式 李委員에 대한 答辯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特委가 발족하고부터 지금까지 運營에 대한 幹事合意도 있고 또 우리한테 부과된 總法律案이 11個인데 그중에 統合選舉法을 하다 보니까 數字가 줄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은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安企部法에 대해서는 第2審議班에서 論議하도록 되어있고 심도있는 論議와 효율적인 審議를 하기 위해서 審議班을 만든 것입니다. 全體會議에서 論議해가지고 심도있게 되고 효율적으로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特委運營의 기본적인 방향이 심도있는 論議와 效率性を 提高하기 위해서 審議班을 시초부터 만들었다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李永權委員께서 그렇게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權委員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朴相千委員 李永權委員 말씀은 審議班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全體會議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니깐 거기에 異議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朴燾太委員 앞으로 幹事會議하기 전에 民主黨幹事는 民主黨委員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와서 좀 권위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 의견이 마치 幹事意見인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자주 혼란을 일으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安企部法은 2審議班에서 하자는 것은 벌써부터 합의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럼 혼자 독단으로 나와서 한 것입니까?

○朴相千委員 李委員은 安企部法을 2審議班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大

體討論을 하자는 것입니다. 全體會議에서 그냥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朴燾太委員 아까 委員長 말씀대로 11個 審議할 것이 있고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갈 길이 멀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해야 國民들의 여망에도 부응을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效率性和 迅速性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그래서 물론 總務處長官께서 提案說明을 해 주셨는데 오늘 會議를 더 效率的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合意事項에 여기서 提案說明을 듣고 각 班別로 부과된 案件에 대해서 오늘 審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사실 班에서 審議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꼭 全體會議에서 물어봐가지고 審議에 크게 효과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李委員님하고 姜委員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永權委員 저 얘기는 그전에 우리 委員會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問題提起가 됐고 그래서 협의를... 그때 議決을 거쳤습니다.

중요한 案에 대해서는 全體會議에서 일단 논의를 하고 또 班에 넘기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議決할 때만 全體會議을 열 것이 아니라 중대한 事案이기 때문에 全體會議을 열고 또 班別로 숙의를 하다가 또 班員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지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중에 한두차례 또 全體會議을 열어서 걸르고 그래서 마지막에 班會議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委員會의 決議로 하는 것이 심도와 效率性を 동시에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決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차례가 아니고 몇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朴燾太幹事나 申委員長님께서서는 우리 幹事が 협의도 안했다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양해를 하라고 하는지 좀 疑端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朴燾太委員께서는 갈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게으른 사람이 석양에 바쁜 법입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많았었는데

이제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은 그 의지 표명을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까 委員長님께서서는 여러가지 일이 산적돼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는 어느정도 예측을 가지고 全體會議에도 임해야 되고 班會議에도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은 모처럼 기대를 가지고 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자리인데 安企部法案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委員長님께서서는 현재 여러가지 事案이 산적돼 있다 할 일이 많다 했는데 특히 委員長님께서서는 懸案에 어떤 것이 계류되어 있고 언제쯤 野黨과 與黨이 法律案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幹事들끼리 얘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적어도 시간이 限時的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안에 우리가 效率的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오늘 앞으로의 計劃表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委員長님이 아까 산적되어 있는 많은 案件이 있는데 라고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姜秀淋委員 지금 提案說明과 관련해서 또 提案說明이기 때문에 그 提案說明의 범위 안에서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提案說明 안에 安企部搜查權問題가 빠져있습니다. 政府案은 搜查權存廢에 대한 것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에서 이 提案說明안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提案은 안 됐지만 우리가 이 搜查權에 대해서 存廢問題를 여기 안 나와 있지만 質疑를 하고 그것을 안한 이유가 提案理由에 또 改正案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또 우리 政治特委에서 계속 이것을 논란을 삼을 여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安企部の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提案에 搜查權 자체가 왜 빠졌는가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搜查權을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安企部는 搜查權을 존치하고 改正案에 提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具體的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鄭均桓委員 거기에 아울러서 提案說明을 보니까各界의 의견을 수렴했다 했는데 어느 各界意見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수렴했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答辯을 같이 해주세요.

○朴相千委員 總務處長官이 答辯하실 것입니까?

政府改正案을 보면 아까 제가 提案說明 드릴 때 비교 검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情報委員會가 安企部豫算의 實質 審査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現行法 10條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豫算會計特例法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總額審査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또 豫備費名目으로 분식을 해서 實質 審査를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豫算審議를 못하고 豫算의 實質 審議를 못하는 情報委員會 또 현재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 第4條에는 軍事外交 對北關係라는 범위를 한정해서 軍事外交 對北關係에서의 國家機密이 國家安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만 答辯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여기서는 國家安全保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機密事項이라고 해서 軍事外交 對北關係라는 말이 빠져있어 가지고 具體的인 어느 분야든지간에 전부 國家安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게 해서 政府의 機密事項聽取도 安企部の 機密事項聽取도 國會에서의 證言·鑑定法을 보다도 더 후퇴되어 있는 安企部法을 내었는데 豫算의 實質 審査도 못하고 機密事項을 청취해서 安企部の 實地監督도 못하는 情報委員會를 무엇때문에 만들려고 하는지 왜 情報委員會를 이름만 붙이고 實質은 없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李永權委員의 마지막 말씀이 全體的인 계획이 어찌나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11月10日 전후까지 兩黨이 案을 내지 아니한 法律案은 案을 준비해서 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日 전후가 되면 모든 案이 다 제출이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選舉法 政黨法 政治資金法 이것이 나오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選舉法은 大統領

選舉法 國會議員選舉法 地方自治團體長·議員
選舉法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選舉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特委에 審議중에 있는
것이 通信秘密保護法과 地方自治法 各 1·2
班에서 審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安
企部法이 提案이 되었으니까 2審議班에서
安企部法을 審議하게 되면 앞으로 各 審議
班이 審議할 수 있는 案件을 가지고 있다
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各黨에서 案件이 다 提出되면 사
실 한 審議班에 몇個의 法律案을 동시에
審査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내하
면서 審議해야 되는 사정이 됩니다.

○李永權委員 國家保安法은 어떻게 돼요?

○委員長 申相式 國家保安法에 대해서는 현
재 우리 民自黨에서는 과거 兩黨 領袖會談
의 결과로 이번에는 審議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 들은 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答
辯準備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朴相千委員 지금 兩黨 領袖會談에서 國家
保安法 審議를 안하기로 했다는데 남의 黨
에 중대한 내분을 일으킬 발언을 委員長이
하셨어요. 그런 말하실 때는 조심해서 하셔
야 합니다. 그때 잠시 유보했다가 나중에
하자고 與黨總裁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黨
代表는 그것이 黨論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答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
확대 해가지고 여기에서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판에 싸움을 한번 일으킬
려고...

○委員長 申相式 아닙니다. 그런 뜻은 없고
新聞에 발표되기로 유보... 다음에 하는 것
으로... 이번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다 냈고 그랬지요. 저는 직
접 領袖會談하신 분들...

○朴相千委員 그러면 新聞에 난 것에 의하
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委員長 申相式 아니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特委委員이나 우리 黨쪽에서는 그
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

그러면 答辯準備를 하기 위해서 잠시 停
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27分 會議中止)

(16時19分 繼續開議)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會議를 續開하겠습
니다.

總務處長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
니다.

○總務處長官 崔昌潤 總務處長官 答辯드리겠
습니다.

먼저 政府가 提案한 安企部法改正案에 대
해서 오랜동안 提案說明을 청취해 주시고
여러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이 審議過程에서 고
견을 주신다면 그 고견을 존중하겠다는 것
이 政府의 입장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姜秀淋委員님께서 이 改正案에서 搜
査權이 존속되는 이유에 관해서 質疑를 하
셨습니다.

이 改正案에 搜查權이 계속 존치되고 있
는 것은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分斷 특수사정
을 고려해서 특히 間諜등 反國家事犯의 搜
査가 아직도 불가피하다는 安企部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搜查分野는 고도의 전문성과 保
安性を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
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國政監査時에도
당시 安企部長께서 國監委員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한 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安企部는 間諜 및 反國家事犯 이외에는 예
컨대 時局事犯 搜查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
겠다고 하는 그러한 점을 國監委員님들에게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安企部의 의지와 입장을 여러
委員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鄭均桓委員님께서 改正案 마련에 있
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어떠한 의
견들을 수렴했는가 라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鄭均桓委員 어떠한 의견들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언제 무슨

의견을 듣고 했나 이런 얘기를 했지요.

○總務處長官 崔昌潤 提案說明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 改正案 마련은 상당히 長時間에 걸쳐서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各界의 意見을 수렴하였습니다.

安企部 자체에서도 광범위한 輿論調査도 했고 많은 自體資料를 참고로 해서 깊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政府內에서도 關聯機關間에 協議가 되었고 특히 檢察이나 警察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였습니다.

또한 法の 중요성을 고려해서 9月20일부터 10月2일까지 立法豫告를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改正案에 관해서는 그동안 社會 各界各層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言論 등에서도 많은 報告가 있었고 意見提示가 있었고 관심있는 분야에서 의견제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各界의 의견들을 安企部에서는 최대한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朴相千委員님께서 改正案이 豫算의 實質審査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國監法에서와 같이 對北 또는 軍事 外交 등으로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國家安企라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改正案은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國會에 설치될 情報委員會의 기능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國會法이 改正되어 情報委員會를 설치할 때에 거기에 具體적으로 規定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質疑하신 내용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改正案은 安企部의 業務를 情報委員會에서 公開한다는 原則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安企部法에는 아까도 지적이 전부 됐었습니다마는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은 資料提出 證言 또 答辯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 改正案에서는 「答辯하여야 한다」라고 이러한 표현을 한 점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質疑하신 對北 軍事 外交라든가 하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國家安全

保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機密事項」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安企部의 概念이 또 時代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安企部는 포괄적으로 規定한 것이지 國家의 機密을 빙자해서 國民이 꼭 알아야 할 것까지 비밀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安企部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앞으로 情報委員會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改正案에서 확고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鄭均桓委員 말씀하세요.

○鄭均桓委員 먼저 우선 安企部法을 上程하면서 總務處長官의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하겠다는 식의 말씀은 지금 長官이 法만드는 거예요? 國會에서 法만드는 거예요 國會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國會에서 만드는 法에 여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國民을 위한 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고려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國會위에 군림해 가지고 法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그 자세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언제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각계각층의 얘기를 다 들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었다 구체적인 예로 나온 것이 檢察 警察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어느 한때는 安企部를 廢止해야 된다는 것이 國民의 정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은 후퇴를 해 가지고 安企部法 改正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무엇인가 경청해야 됩니다. 安企部가 언제 수사한다고 해 놓고 수사했어요? 언제 人權彈壓한다고 공개해 놓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당한 국민들 실질적으로 安企部 地下室에 가서 당한 사람들 무엇을 존치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는 것이 좋겠더라 하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것 같고 거기까지는 못 듣는다 하더라도 一般國民들 관심있는 국민들한테 公聽會라도 해서 이런 것을 듣고 와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는 식의 보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도 다시 반복해서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었다고 여러가지 얘기하시면서 기껏 구체성을 나타낸 것이 檢察 警察 얘기를 들었다 草線은 同色입니다 들으나 마나예요. 그런 얘기 들고 와 가지고 國會에 上程하면서 각계각층의 얘기 다 들어 가지고 제출한 것인양 惡法중의 惡法을 다시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答辯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政治特委에서 改革立法을 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獨逸 英國 美國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정말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安企部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 못지 않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사찰하고 괴롭히는 그런 安企部가 아니라 國內外高級情報를 전부 입수해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국가간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짜릿한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安企部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장 핵이 될 수 있는 搜查權을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討論을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의견을 주시면 고려하겠다는 식의 자세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 수렴한 것처럼... 그것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檢察 警察에게 물었다 이런 식의 答辯을 이런 식의 자세로 國會에 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유감스

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1班 2班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諸廷姬委員** 조금전에 答辯하시는 중에 각계의 광범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물어본 문항이 어떤 것이고 각 문항에 대해서 몇명을 물었는데 몇%의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그것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朴相千委員** 우선 總務處長官께서 여기에 어찌서 나오셨습니까?

○**總務處長官 崔昌潤** 總務處가 提案部處로 되어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이 法案이 國務會議 通過할 때 國務委員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總務處長官 崔昌潤** 사전에 國務會議에 法案이 上程되기 전에 各部處에 法案을 전부다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各部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이런 의견을 전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檢察이나 警察을 말씀드린 것은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搜查權問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檢察 警察이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搜查權存置問題에 대한 質疑가 나오셨고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 때문에 특별히 거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相千委員** 國務會議에서 이 法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나 反改革的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總務處長官 崔昌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意見이 대부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次官會議를 거치고 다시 次官會議를 거치고 그 다음에 國務會議를 거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國務會議에서도 제가 提案說明을 했고 國務會議에 올라오기 전까지 모든 意

見이 사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 기역에는 특별히 거기에서 논란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朴相千委員 國務委員들이 安企部法에 대해서는 감히 얘기해서 손해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지요. 아니면 사전에 경고를 받았거나...

아까 答辯중에 國會法改正時에 情報委員會의 權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崔長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國會法에는 情報委員會가 설치되면 情報委員會 所管業務만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安企部長이 어느 범위까지 國家機密을 答辯하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國會가 政治特委에서 通過해서 本會議에서 通過할 安企部法에 어긋나게 國會法을 만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安企部法은 答辯範圍를 축소해 놓고 國會法에서 다시 확대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요. 또 무슨 規定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規定은 法에 있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지 法을 넘어서는 規定은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두면 國會에 情報委員會를 만들 이유가 없어져버려요. 豫算實質審査도 못하고 答辯範圍도 현재보다 줄어 들고 현재의 國防委보다 더 권한이 약한 情報委員會를 무엇하러 만듭니까? 그것은 豫算浪費입니다.

總務處長官께서는 國務委員이니까 安企部法改正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政府쪽 의도를 재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安企部가 法은 옛날 그대로 두고 운영을 잘하겠고 어지간한 것은 다 報告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安企部는 安企部法에 規定된 대로 해야 됩니다. 安企部法에 權限이 주어져 있으면 그 權限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지 安企部法에 權限을 주어놓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職務遺棄입니다.

그리고 法은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운영을 잘하겠다는 것은 民主法治國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대답하기 어렵

겠지만 이 이야기도 政府內에서 널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提案說明에서 평소의 提案說明보다 조금 광범위하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政府의 改正案대로 安企部法이 改正된다면 이것은 現政府의 文民政府의 性格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改正해 보았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反對是非가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國民들이 묵인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 지금보다 더 權限을 행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搜查權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搜查權을 가지고 있는 情報機關이 옛날 蘇聯의 KGB하고 東獨 情報機關하고 몇군데가 있었는데 情報戰爭에서 전부 졌습니다. 情報戰爭에서 이긴 나라는 오직 情報만 하는 情報機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情報機關이 情報은 안하고 搜查하고 保安監査하고 남의 機關들 調整하고... 언제 情報합니까? 그런 나라들 다 졌습니다.

獨逸가니까 獨逸情報部長들이 6,000명을 가지고 1萬8,500명의 東獨情報機關을 이겼다고 합니다. 東獨情報機關은 搜查權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情報機關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企業體社長을 봐도 企業에만 전념할 때 그 會社가 불어나지 골프치러 다니고 감투 하나 쓰고 어디 가서 재고... 그런 사람들은 부도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安企部가 情報專門機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한 安企部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總務處長官 두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長官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말이 마음속으로라도 일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諸廷坵委員 輿論調査한 것 지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總務處長官 崔昌潤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委員님들의 高見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고려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안했고

요.

앞으로 審議過程에서 여러 高見들이 나오
시면 존중한다는 것이 政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상당한 시간에 걸쳐
서 오랜 기간동안 마련한 案인 것을 여러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장 내놓으라고 하
면 지금 저도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앞
으로 審議過程에서...

○諸廷坵委員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광범한
輿論調査를 했다고 그러니까 輿論調査를 했
으면 구체적으로 이 條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또 輿論調査라고 하는 것이 政府內에서 關
係機關에 이 部處에 물어보고 저 部處에
물어보는 것 가지고 輿論調査라고 표현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輿論調査를 했다면 정말
輿論調査機關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런 輿論調
査를 했다는 증거가 있을 것이니까 그 증
거가 진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
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輿論調査를 한 증거가 있습니까?
몇 차례나 했어요?

○總務處長官 崔昌潤 審議過程에서 말씀 드
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諸廷坵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答辯
하시는 것이 우리 朴相千委員님이 말씀하시
고 지적했다시피 전부 다 일종의 거짓말
같아요. 실질적인 근거가 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安企部長이
搜查權은 있는데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축
소시켜서 하겠다라고 했다거나 國家機密을
핑계로 해서 國民에게 필요한 情報까지도
안주는 이런 것을 안하고 잘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그렇다면 굳이 法을 만들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지요. 安企部長이 잘 하려고
하는데 法을 왜 고칩니까?

그냥 두고도 安企部長이 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시간낭비하면서 여기 앉아서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安企部長 裁量權에 맡겨
주어야지요. 그렇다면 이 法案을 내놓는 이
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安企部長이 잘 하겠다고 하는데 왜 法案
을 만듭니까?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오늘 會議는 이상
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後에 審議班別會議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42分 散會)

○出席委員

申相式	姜信玉	金榮駟
金榮珍	朴憲基	朴燦太
白南治	黃潤鎰	姜秀淋
朴相千	李永權	鄭均桓
諸廷坵	洪思德	曹駟鉉
車秀明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門委員	韓世東
立法審議官	朴奉國
立法審議官	申世華

○出席國務委員

總務處長官	崔昌潤
-------	-----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 審議特別	李沅衡	諸廷坵	民主黨

(11月4日字)

○議案回附

政黨法中改正法律案

(9月17日 趙世衡·洪思德·金炳午·朴相千·鄭
均桓·李協·鄭璣浩·柳寅泰議員外 88人 發
議)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9月17日 朴相千·金炳午·張基旭·金忠兆·姜
喆善·姜秀淋·林采正·楊文熙議員外 88人 發
議)

이상 2件 9月17日字 回附됨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

(10月29日 政府提出)

10月29日字 回附됨